소관부서: 자치행정과

제정 1996 · 3 · 1 조례 제 41호 개정 2001 · 3 · 7 조례 제 364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 개정 2001 · 8 · 1 조례 제 383호 개정 2001·11·28 조례 제 392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 개정 2004 · 1 · 10 조례 제 473호 (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) 개정 2009 · 6 · 3 조례 제 765호 일부개정 2015 · 8 · 10 조례 제1128호 일부개정 2018 · 5 · 18 조례 제1392호 일부개정 2023 · 3 · 6 조례 제1900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7호 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일부개정 2025·11· 7 조례 제2296호 (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이천 시 본청,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(부속기관을 포함)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, 관리 방법,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5・8・10, 2018・5・18, 2025・11・7〉 [전문개정 2009・6・3]
- 제2조(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)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, 자문기관,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. 〈개정 2015·8·10〉
 - ②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, 소속행정기관의 장,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.〈개정 2009·6· 3, 2015·8·10〉
 -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,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

- 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행정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9・6・3〉
-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·6·3〉
- ⑤ 삭제〈2018·5·18〉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 ·8·10, 2018·5·18〉
- 제3조(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 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 〈개정 2009·6·3, 2015·8·10〉
- 제4조(특수공인)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·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,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. 〈개정 2009·6·3, 2015·8·10〉
 - 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·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.〈신설 2001·8·1, 개정 2001·11·28, 2004·1·10, 2009·6·3, 2018·5·18〉
- 제5조(규격 및 인영의 내용) ① 공인의 모양은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·하부행정기 관의 장이 정하되,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으로 한다.〈개정 2009·6·3〉
 -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"인" 또는 "의인"자를 붙인다. 〈개정 2001·8·1, 2009·6·3〉
- 제6조(각인)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. 다만,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 출납원,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.
- **제7조(공인의 등록)** ① 공인은 시장에게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. 〈개정 2001·3·7, 2001·8·1, 2004·1·10, 2009·

(추 3)

 $6 \cdot 3 \rangle$

-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01·8·1, 개정 2004·1·10, 2015·8·10〉
- ③ 공인의 신조,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. 〈신설 2004·1·10, 개정 2023·3·6, 2024·7·1〉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〈신설 2001·8·1, 개정 2015·8·10〉

[제목개정 2018·5·18]

- **제8조(공인대장)**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, 재등록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 1·3·7, 2001·8·1, 2023·3·6, 2024·7·1〉
- **제9조(인영의 보존)**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 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·3·7, 2023·3·6, 2024·7·1〉
- **제10조(공고)**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시 장은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4·1·10, 2015·8·10, 2018·5·18〉
 - 1. 삭제〈2018·5·18〉
 - 2. 삭제〈2018 5 18〉
 - 3. 삭제〈2018·5·18〉
 - 4. 삭제 〈2018·5·18〉
 - 5. 삭제〈2018·5·18〉
 -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〈개 정 2004·1·10, 2015·8·10, 2018·5·18〉
 - 1.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
 - 2. 등록·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
 - 3. 등록·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
 - 4. 공고기관의 장

[전문개정 2001·8·1]

- 639 - (추 3)

제11조 삭제〈2001·8·1〉

- 제12조(재등록 및 폐기)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. 〈개 정 2001·3·7, 2001·8·1〉
 -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시장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, 그 공인을 원형 그대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」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폐기되는 공인을 이관받은 지방기록물관리관은 폐기되는 공인이 오용, 도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·3·7, 2001·8·1, 2004·1·10, 2015·8·10〉
 - ③ 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재 후 보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·8·1〉
 -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,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\langle 신설 $2001 \cdot 8 \cdot 1$, 개정 $2004 \cdot 1 \cdot 10$ \rangle
- 제12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등록신청(재등록 및 폐기 신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하고,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, 정보통신담당관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. 〈개정 2004·1·10, 2009·6·3, 2018·5·18, 2023·3·6, 2024·7·1〉
 - 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4·1·10〉
 - ③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 〈개정 2004·1· 10, 2018·5·18, 2023·3·6, 2024·7·1〉

(추 3) - 640 -

-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\langle 신설 $2004 \cdot 1 \cdot 10\rangle$
- 제13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,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8·5·18〉
- 제14조(공인관수자)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.
- 제15조(관수방법)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기관에서는 2중금고에 보관한다. 〈단서신설 2009. 6. 3〉
- **제16조(공인의 날인)** ① 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)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공 인관수자가 공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1·8·1, 200 4·1·10, 2018·5·18〉
 -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. 다만, 등·초본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
- 제17조(규칙)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1·3·7 조례 제36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1·8·1 조례 제383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1·11·28 조례 제392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〈2004·1·10 조례 제473호,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9・6・3 조례 제765호〉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공인은 새로이 공인을 제작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〈2015・8・10 조례 제112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·5·18 조례 제1392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) 폐기되는 공인은 관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이천시기록관으로 이관한다.

부칙〈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②6 「이천시 공인 조례」제7조제3항, 제8조 및 제9조 중 "자치행정과장"을 각각 "행정지원과장"으로 하고, 제12조의2제1항 중 "자치행정과"를 "행정지원과"로, "자치행정과"을 "행정지원과장"으로, "정보통신과장"을 "정보통신담당관"으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행정지원과장"으로 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24·7·1 조례 제2117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② 「이천시 공인 조례」 제7조제3항, 제8조 및 제9조 중 "행정지원과장"을 각각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하고, 제12조의2제1항 중 "행정지원과"를 "자치행정과"로, "행정지원 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,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지원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한다.

(추 3)

② 부터 ② 까지 생략

부칙〈2025·11·7 조례 제2296호,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〈개정 2015·8·10〉

공인의 규격(제5조 관련)

(단위 : cm)

| | 구 분 | 길 이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청 인 | 합의제 기관, 의결기관, 자문기관 | 3.6 |
| 직 인 | 가. 시장 나.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| 3.0 2.4 |
| 회계관계 공무원 공인 | 가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부채 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.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(수입금, 일상경비, 세입 세출외현금, 물품 등)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| 2.0 |
| 철 인 | 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| 2.0 |

※ 비고 : 위 길이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길이, 원 또는 다각형의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. 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8 • 5 • 18〉

수신 (경유)

기 관 명

| 제목 [] | • | 등록) 신청 지공인) 폐기 신고 인 등록(재등록) 신청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「이천시 공인 조례」 제7조제2항, 제12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[] 공인 등록(재등록) 신청 [] 공인(전자이미지공인) 폐기 신고 [] 전자이미지공인 등록(재등록) 신청합니다. | | | | |
| 공인 명칭 | | | | |
| 종류 | | [] 청인 [] 특수공인 | | |
| 등록(재등록, 폐기) 사유 | | | | |
| | 폐기 예정일 (분실일) | 년 월 일 | | |
| 폐기 대상 공인 처리 | 폐기 방법 | [] 이관 [] 기타() | | |
| | 폐기한 사람 (분실한 사람) | 소속: 직급: 성명: | | |
| 비고 | | | | |



| 기안자 | 직위(직 | 급) 서명 | 검토자 | 직위(직급) | 서명 | | 결재권자 | 직위(직급) 서명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협조자 | | | | | | | | |
| 시행 | | 처리과명-연도별 | 일련번호(시행일) | | 접수 | | 처리과명-연 | 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 |
| 우 | | 도로명주소 | | | | / 홈페이지 주 | 소 | |
| 전화번호 | <u> </u> | 型 | 付스번호() | | | / 공무원의 전 | 자 우 편주소 | / 공개 구분 |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)

비고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- 문서를 작성할 때 "행정기관명", "발신명", "기안자", "검토자", "결재권자", "직위(직급) 서명", "처리과 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", "도로명주소", "홈페이지 주소", "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", "공개 구분"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.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18·5·18〉

공 인 대 장

| 공인 명칭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|--|
| 종류 | [] 청인 [] 직 | l인 [] 특수a | 공인 | 관리부서 | | | | |
| | | 등록일(재등록일) | | 년 | 월 | 일 | | |
| | | 새긴 날짜 | | 년 | 월 | 일 | | |
| | | 새긴 사람 | 주소: 성명 및 상 생년월일: | কু: | | | | |
| [] 등록 | (인영) | 최초 사용일 | | 년 | 월 | 일 | | |
| [] 재등록 | (2 8) | 재료 | | | | | | |
| | | 등록(재등록) 사유 | | | | | | |
| | | 시보 공고 | | | 월 제 - | 일 | | |
| | | 비고 | | | | | | |
| | (인영) | 등록일(재등록일) | | 년 | 월 | 일 | | |
| | | 폐기일(분실일) | | 년 | 월 | 일 | | |
| | | 폐기 사유 | []마밀 | 별 [] 분설 | 월 [] | 기타(|) | |
| 폐기 | | 폐기 방법 | [] 이콘 | 발 []기E | 타(|) | | |
| | |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| 소속: 직급: | 성 | 명: | | | |
| | | 시보 공고 | | | 월 제 - | 일 | | |
| | | 비고 | | | | | | |

< 작성 방법 >

- 1.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[] 등록란에 ∨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[] 재등록란에 ∨표를 한다.
- 2.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m²)

[별지 제2의2호서식] 〈개정 2018 • 5 • 18〉

전자이미지공인대장

| 공인 명칭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|
| 종류 | [] 청인 | [] 직인 | [] 특수공인 | | | |
| |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| 등록일(재등록일) | 년 월 | 일 | | |
| | | 등록(재등록) 사유 | | | | |
| | | 관리부서 | | | | |
| | | 전 | 자이미지공인 사용 기 | 관(부서) 현황 | | |
| [] 등록 [] 재등록 | | 사용 기관(부서) | 시스템 명칭 | 통보일 | 최초 사용일 | |
| | TITIO - 1 T - 2 0 1 | | | | | |
| |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비고 | | | | |
| 폐기 | | 폐기일 | 년 월 | 일 | | |
| |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| 폐기 사유 | | | | |
| | | 폐기한 사람 | 소속: 직급: | 성명: | | |
| | |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(부서)에 대한 조치 | | | | |
| | | 사용 기관(부서) | 시스템 명칭 | 통보일 | 최종 사용일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< 작성 방법 >

- 1.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[] 등록란에 ∨표를, 재등록하는 때에는 [] 재등록란에 ∨표를 한다.
- 2.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- 3.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m²)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8·5·18〉

인 영 부

기관명: (. 2. 1. 현재)

| 공 인 명 | 공 인 의 인 영 | 공 인 명 | 공 인 의 인 영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〈2001·8·1〉 [별지 제5호서식] 삭제〈2001·8·1〉

[별지 제6호서식]

공 인 사 고 보 고 서

| 1. 사고 공인명 | |
|----------------|--|
| 2. 사고 발생일시 | |
| 3. 사고 내용 | |
| 4. 사고 후의 조치 결과 | |
| 5. 비고 | |

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(인)

이 천 시 장 귀하